



# 가정통신문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49

교무실 : 239-3007

보건실 : 239-3051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평가관련 지침(6.1일 이후)’에 근거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중 [정기고사 인정점 부여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꼭 확인하시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전일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내용 안내 - 코로나19 관련 인정비율 부여방법 개정

### 4. 인정비율 부여방법

####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2) 법정감염병(눈병, 독감 등), 코로나19 확진(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 (변경)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받은 학생이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임을 의사가 소견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1) 질병(가의 2제외)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2) (변경) 법정감염병(눈병, 독감 등),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 포함) 학생 중 법정 감염병 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일반 의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4) (추가)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1) 정기고사 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결시한 경우

2) (추가) 결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023. 6. 27.

전 일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